

(판 인 생 략)

시 울 특 별 시

행정 150-262

(725-7826)

1984. 5.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제 목 :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표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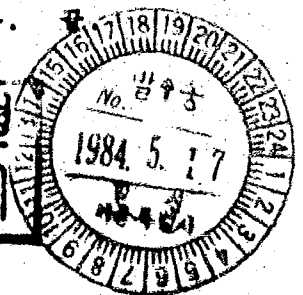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에 관한 조제가 제정 공포(84.5.7 서울특별시조제 제 1884 호)되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표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의 경우 부당한 요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

2.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에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및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부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총무과로 신고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전직원이 적극 참여토록 하기 바랍.

첨 부 :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표 1부.

제	인정2재장	인정1재장	문서관리재장	시민과장	결
					제

서울특별시장



서실 1-2, 서기 1, 서단 1, 서관 1-2, 서국 1-12, 서과 1-74, 서 1-23, 서소 1-10, 서사 1-59, 대 1-11, 서보 1-17, 구청각과 (340), 전동 (426)

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표

1. 부동산중개 수수료

서울시 조례 제 1884 호 (84.5.7)

- 수수료 지불시기 - 계약성립시 반액, 거래대금 완불시 반액
- 수수료 부담 - 매매당사자가 다음 요율 및 한도액에 의해 각각 부담

종 별	거 래 가 액	수 수 료 요 율	한 도 액
매매, 교환	5백만원미만	1만분의 90 이내	35,000 원 이내
	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	1만분의 70 "	60,000 원 "
	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	1만분의 60 "	150,000 원 "
	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	1만분의 50 "	200,000 원 "
	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	1만분의 40 "	300,000 원 "
	1억원이상 2억원미만	1만분의 30 "	500,000 원 "
	2억원이상 4억원미만	1만분의 25 "	800,000 원 "
	4억원이상 8억원미만	1만분의 20 "	1,200,000 원 "
매매, 교환 이 외 의 임대차등	8억원이상	1만분의 15 "	3,000,000 원 "
	1백만원미만	1만분의 80 "	7,000 원 "
	1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	1만분의 70 "	30,000 원 "
	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	1만분의 60 "	50,000 원 "
	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	1만분의 50 "	120,000 원 "
	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	1만분의 40 "	150,000 원 "
	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	1만분의 30 "	250,000 원 "
	1억원이상 2억원미만	1만분의 25 "	400,000 원 "
2억원이상 4억원미만	1만분의 20 "	600,000 원 "	
4억원이상	1만분의 15 "	1,500,000 원 "	

-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,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대차중 월세일 경우 월세보증금액 + (월세액 × 계약기간 해당월수)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.

2. 중개건물의 확인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80 7

- 실비지불시기 - 중개업자와 중개목적의 확인 건의 약정에 의함.
- 실비 부담자 - 매도, 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
-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기준

청 구 의 범 위	금 액
○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	• 1건당 1,000 원
○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	•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
○ 교통비 숙박료 등 여비	• 실 비

-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등에 대한 확인을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.